

[별표 1]

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기준

□ 필수 지정대상

용도별 (대상)	선정 기준	
1. 대형 건축물	◦ 특별시 ◦ 광역시 ◦ 도(道)의 시 (인구수 100만명 이상)	① 50층 이상(지하층은 제외한다) 또는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(아파트는 제외한다) ② 연면적 20만㎡ 이상인 건축물(아파트 및 창고는 제외한다) ③ 연면적 10만㎡ 이상인 창고
	◦ 특별자치시 ◦ 도(道)의 시 (인구수 100만명 미만)	④ 30층 이상(지하층은 제외한다) 또는 높이가 120m이상인 건축물(아파트는 제외한다) ⑤ 연면적 10만㎡ 이상인 건축물(아파트는 제외한다)
	◦ 도(道)의 군(郡)지역	⑥ 20층 이상(지하층은 제외한다)인 건축물(아파트는 제외한다) ⑦ 연면적 5만㎡ 이상인 건축물(아파트는 제외한다)
2.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	◦ 특별시 ◦ 광역시 ◦ 도(道)의 시	① 「위험물안전관리법」상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 중 화학소방자동차를 2대 이상 설치하는 사업소
	◦ 특별자치시 ◦ 도(道)의 군(郡)지역	② 지정수량의 합이 3,000배 이상인 위험물을 저장·취급하는 사업소
3. 의료시설	◦ 특별시 ◦ 광역시 ◦ 도(道)의 시 (인구수 100만명 이상)	① 종합병원으로 5층 이상(지하층은 제외한다)이고 병상이 400개 이상인 건축물 ② 요양병원으로 5층 이상(지하층은 제외한다)이고(건축물의 일부층을 요양병원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층수에 관계 없음) 병상이 200개 이상인 건축물 ③ 정신의료기관으로 5층 이상(지하층은 제외한다)

		다)이고(건축물의 일부층을 정신의료기관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층수에 관계 없음) 병상이 200개 이상인 건축물
	◦ 도(道)의 시 (인구수 100만명 미만)	④ 종합병원으로 5층 이상(지하층은 제외한다)이고 병상이 200개 이상인 건축물 ⑤ 요양병원으로 5층 이상(지하층은 제외한다)이고(건축물의 일부층을 요양병원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층수에 관계 없음) 병상이 150개 이상인 건축물 ⑥ 정신의료기관으로 5층 이상(지하층은 제외한다)이고(건축물의 일부층을 정신의료기관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층수에 관계 없음) 병상이 150개 이상인 건축물
	◦ 특별자치시 ◦ 도(道)의 군(郡)지역	⑦ 종합병원으로 3층 이상(지하층은 제외한다)이고 병상이 100개 이상인 건축물 ⑧ 요양병원으로 3층 이상(지하층은 제외한다)이고(건축물의 일부층을 요양병원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층수에 관계 없음) 병상이 100개 이상인 건축물 ⑨ 정신의료기관으로 3층 이상(지하층은 제외한다)이고(건축물의 일부층을 정신의료기관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층수에 관계 없음) 병상이 100개 이상인 건축물
4. 숙박시설	◦ 특별시 ◦ 광역시 ◦ 도(道)의 시 (인구수 100만명 이상)	① 5층 이상(지하층은 제외한다)으로 객실이 200개 이상인 건축물(고시원을 제외한다)
	◦ 도(道)의 시	② 5층 이상(지하층은 제외한다)으로 객실이 150

	(인구수 100만명 미만)	개 이상인 건축물(고시원을 제외한다)
	◦ 특별자치시 ◦ 도(道)의 군(郡)지역	③ 3층 이상(지하층은 제외한다)으로 객실이 100개 이상인 건축물(고시원을 제외한다)
5. 노유자시설	◦ 특별시 ◦ 광역시 ◦ 도(道)의 시 (인구수 100만명 이상)	① 5층 이상(지하층은 제외한다)으로 연면적이 3,000㎡ 이상이고(건축물의 일부층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층수에 관계 없이 노유자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,000㎡ 이상인 건축물) 수용인원이 200인 이상인 건축물(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제외한다)
	◦ 특별자치시 ◦ 도(道)의 시 (인구수 100만명 미만)	② 3층 이상(지하층은 제외한다)으로 연면적이 2,000㎡ 이상이고(건축물의 일부층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층수에 관계 없이 노유자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,000㎡ 이상인 건축물) 수용인원이 150인 이상인 건축물(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제외한다)
	◦ 도(道)의 군(郡)지역	③ 2층 이상(지하층은 제외한다)으로 연면적이 1,000㎡ 이상이고(건축물의 일부층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층수에 관계 없이 노유자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,000㎡ 이상인 건축물) 수용인원이 100인 이상인 건축물(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제외한다)
6. 다중이용업소	◦ 특별시 ◦ 광역시 ◦ 도(道)의 시 (인구수 100만명 이상)	① 한 개 업소의 영업장 면적이 2,000㎡ 이상인 유흥주점, 단란주점, 콜라텍, 안마시술소, 산후조리원,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노래연습장이 입주한 건축물 ② 한 개 영업장 면적이 1,000㎡ 이상인 고시원이 입주한 건축물

		③ 영화상영관으로 상영관이 10개 이상 또는 지하층에 입주한 건축물
	◦ 특별자치시 ◦ 도(道)의 시 (인구수 100만명 미만)	④ 한 개 업소의 영업장 면적이 1,000㎡ 이상인 유흥주점, 단란주점, 콜라텍, 안마시술소, 산후조리원,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, 노래연습장 또는 고시원이 입주한 건축물 ⑤ 영화상영관으로 상영관이 6개 이상 또는 지하층에 입주한 건축물
	◦ 도(道)의 군(郡)지역	⑥ 한 개 업소의 영업장 면적이 500㎡ 이상인 유흥주점, 단란주점, 콜라텍, 안마시술소, 산후조리원,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, 노래연습장 또는 고시원이 입주한 건축물 ⑦ 영화상영관으로 상영관이 2개 이상 또는 지하층에 입주한 건축물

※ 비고

- 필수 지정대상 : 소방기관의 장이 당연 지정하는 대상, 다만 선정 기준에 적합한 특정 대상(용도)별 10개를 넘을 때에는 화재위험성을 평가하여 대상(용도)별 10개만 지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10개만 지정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.
- 의료기관의 병상이란 의료기관개설허가증에 기재된 병상을 말한다.
- 창고는 물류창고, 물류터미널, 냉동·냉장창고 등 물류·유통관련 시설을 말한다.
- 수용인원은 시설별 개별 법령에 따른 허가, 승인, 인가된 인원으로 하고 별도의 수용인원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4의 수용인원 산정방법에 따른다.
-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.
- 위험물 저장 및 취급시설중 군사 또는 국가보안시설은 제외한다.
-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은 건축물을 기준으로 지정한다. 다만 하나의 사업장안에 위 표에 해당하는 대상과 해당하지 않은 대상이 혼재하여 있을 경우에는 사업장 전체를 지정한다.
- 인구수는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.

□ 심의 지정대상

용도별 (대상)	선정 기준	
1. 고층 건축물	◦ 특별시 ◦ 광역시 ◦ 특별자치시 ◦ 도(道)의 시	① 층수가 30층 이상(지하층은 제외한다) 또는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㉠ 건축물 외장재를 가연성 외장재로 시공하고 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을 다른 소화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 ㉡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이 있는 주상복합건축물로 스프링클러설비 등 자동소화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
	◦ 도(道)의 군(郡)지역	② 층수가 16층 이상(지하층은 제외한다)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㉠ 건축물 외장재를 가연성 외장재로 시공하고 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을 다른 소화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 ㉡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이 있는 주상복합건축물로 스프링클러설비 등 자동소화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
2. 판매시설	◦ 특별시 ◦ 광역시 ◦ 도(道)의 시 (인구수 100만명 이상)	① 시장·백화점 및 대형할인매장으로 연면적 40,000㎡ 이상인 건축물
	◦ 도(道)의 시 (인구수 100만명 미만)	② 시장·백화점 및 대형할인매장으로 연면적 20,000㎡ 이상인 건축물
	◦ 특별자치시 ◦ 도(道)의	③ 시장·백화점 및 대형할인매장으로 연면적 10,000㎡ 이상인 건축물

	군(郡)지역	
3. 복합건축물	◦ 특별시 ◦ 광역시 ◦ 도(道)의 시 (인구수 100만명 이상)	① 하나의 건축물로 연면적 5만㎡ 이상인 건축물 (주상 복합건축물의 경우에는 주택부분의 면적을 제외한다)
	◦ 특별자치시 ◦ 도(道)의 시 (인구수 100만명 미만)	② 하나의 건축물로 연면적 4만㎡ 이상인 건축물 (주상 복합건축물의 경우에는 주택부분의 면적을 제외한다)
	◦ 도(道)의 군(郡)지역	③ 하나의 건축물로 연면적 2만㎡ 이상인 건축물 (주상 복합건축물의 경우에는 주택부분의 면적을 제외한다)
4. 지하상가	◦ 특별시 ◦ 광역시 ◦ 도(道)의 시 (인구수 100만명 이상)	① 연면적이 4,000㎡ 이상인 지하상가
	◦ 특별자치시 ◦ 도(道)의 시 (인구수 100만명 미만) ◦ 도(道)의 군(郡)지역	② 연면적이 2,000㎡ 이상인 지하상가
5. 다중 이용업소	◦ 특별시 ◦ 광역시 ◦ 특별자치시 ◦ 도(道)의 시	① 한 개 영업장 면적이 1,000㎡ 이상인 다중이용 업소가 입주한 건축물
	◦ 도(道)의	② 한 개 영업장 면적이 500㎡ 이상인 다중이용

	군(郡)지역	업소가 입주한 건축물
6. 공장 및 창고	① 연면적이 30,000㎡ 이상인 공장 ② 연면적이 30,000㎡ 이상인 창고	
7. 기타	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소방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① 화재위험성이 높은 경우 ②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③ 화재발생시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④ 소방차 접근이 어려워 화재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⑤ 위험물, LPG 등 가연성 물질을 다량 저장·취급하는 경우 ⑥ 특수가연물을 1천배 이상 저장·취급하는 경우	

※ 비고

- 심의 지정대상 : 소방기관의 장이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화재위험성이 높다고 인정하는 대상
- 가연성 외장재 : 외벽의 30퍼센트 이상을 알루미늄복합패널, 복합재 등 비 불연재료로 시공한 경우
- 창고는 물류창고, 물류터미널, 냉동·냉장창고 등 물류·유통관련 시설을 말한다.
-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은 건축물을 기준으로 지정한다. 다만 하나의 사업장안에 위 표에 해당하는 대상과 해당하지 않은 대상이 혼재하여 있을 경우에는 사업장 전체를 지정한다.
-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.
- 인구수는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.